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41
----------	-------

발의연월일 : 2026. 5. 21.

발 의 자 : 강경숙·김선민·서왕진  
차규근·정춘생·김준형  
백선희·황운하·김재원  
이해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수련시설과 그 밖에 청소년이용시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청소년이 타인과 만나고 교류하면서 인생의 소중한 경험을 쌓고 성장하는데 유익한 기회와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임.

그런데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심신 수련에 기여하는 바가 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청소년복지시설 등에 비하여 공익 시설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기부금 등 후원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이라도 기부금품 접수가 제한되어 기부금을 받기가 더욱 어려운 처지에 있음. 따라서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도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활동시설로 하여금 운영·사업 자금 부족 등의 어려움 없이 청소년에게 양질의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누구든지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하여 금전 등을 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금전 등의 기부) ① 누구든지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32조의2(청소년활동시설에    대</u>  <u>한 금전 등의 기부) ① 누구든</u>  <u>지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 및</u>  <u>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u>  <u>또는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u>  <u>수 있다.</u></p> <p><u>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u>  <u>설치·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u>  <u>설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u>  <u>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u>  <u>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u>  <u>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u>  <u>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u>  <u>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u></p> <p><u>③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u>  <u>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u>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